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5일, 남인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7.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3.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3.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남인순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당겨짐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으로 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국고로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보장을 명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보장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 지급보장 책임에 따른 장기적인 국고

재원 마련 방안 등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가부채 규모와 국가신인도 평가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이 법률에 명문화되더라도 곧바로 국가 충당부채에 계상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국민연금급여는 지급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에 드는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추가적인 연금개혁의 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 측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조문의 취지와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고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을 초과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게 되면 향후 국민연금기금 고갈 후 당해연도 세수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점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부과방식·부분적
립방식 등 국가별 공적연금 운영방식의 차이와 약 1,170조원의 국민연
금기금 적립금이 야기할 수 있는 ‘착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국가의 책임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